

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2606호

도시관리계획(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)(안) 재열람공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1891호(2018.8.16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 합니다.

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0월 21일
서울특별시

가. 구역명 :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신설	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서구 화곡동 일대 양천구 신월동, 신정동 일대	-	증)622,000	622,000	

※ 세부 구역의 범위,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

다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

라. 관련도서 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)

마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: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

-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 02-2133-8386, FAX : 2133-0738)
- 강서구 도시계획과(☎ 02-2600-6384)
- 양천구 도시계획과(☎ 02-2620-3507)

바. 기타사항

-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 02-2133-838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- 2609호

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법」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위반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1일

서울특별시

1. 건 명: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
2. 근 거: 『도로법』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,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17조 제1항, 지방세기본법 제33조,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 - 가.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

대상자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내용
성 명	주 소		
정성욱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**6 *1동 **1호(원곡동, **상가)	일시 : 2021-05-27 13:15 장소 : 서울시 영등대로 내용 : 차량의 길이 제한 0.25미터 초과	과태료 : 30만원
이영진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**5 **8동 ***2호(용현동, *****트)	일시 : 2021-06-07 10:18 장소 :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내용 : 차량의 폭 제한 0.28미터 초과	과태료 : 30만원
손경수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**4번길 *7-* **6호(오천읍)	일시 : 2021-06-20 06:30 장소 : 서울시 올림픽대로 내용 : 차량의 폭 제한 0.28미터 초과	과태료 : 30만원

나.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

대상자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내용
성 명	주 소		
이재열	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**6,**2동 **2호 (정왕동, **산아파트)	일시 : 2021-08-06 13:43 장소 : 서울시 아리수로 내용 : 차량의 길이 제한 0.28미터 초과	과태료 : 30만원